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15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환기적용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조세의 배분범위 확대(안 제111조)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규정함.

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안 제125조의3부터 제

125조의5까지 및 제125조의7 신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글로벌최저한세의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대상조세는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안 제125조의8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함.

라.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안 제142조)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및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한 배분방식에 따라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또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의 제출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함.

마. 전환기 적용면제 등(안 제138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전환기사업연도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

세액을 영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연도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
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1호나목 중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을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과 다른 그룹 또는 기업 간 합병의”로, “중에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를 “그룹 또는 기업의 사업연도”로,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합병일”을 “그룹 또는 기업의 합병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추가세액의 계산”을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로 한다.

제104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11조의 제목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을 “(구성기업의 대상

조세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기업”을 “구성기업 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기업의”로, “기업을 말하며,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를 “기업(이하 이 장에서 “혼성기업”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성기업으”를 “다른 구성기업 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로,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기업의 소유지분”으로, “구성기업에”를 “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을 “대상조세 금액의 계산에 반영된 소득을 얻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로 한다.

가.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

제111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다른 구성기업 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가 아닌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에 배분한다.

1. 구성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중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에 한정한다): 해당 대상조세 금액의 계산에 반영된 소득을 얻은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
2. 주주구성기업이 제1항제5호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은 모든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은 배분하지 않는다.

제119조제2항 중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을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합계액)”으로,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을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조정대상조세”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2조 앞의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를 삭제한다. 제122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125조의2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산입

보완규칙

$$\text{국내구성} = \left(\frac{A}{B} \times \frac{50}{100} \right) + \left(\frac{C}{D} \times \frac{50}{100} \right)$$

기업

배분비율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제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다.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제125조의2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5장 제3절 제1관(제125조의3부터 제125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2.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분되는 대상조세로서 우리나라 이외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나. 법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3.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이하 이 호에서 “국외배당”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조세. 다만, 사업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국외배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4.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적용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73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3항
4. 제104조제1항제10호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

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
 최저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
 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5장제3절제2관(제1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도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A × $\frac{B}{C}$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 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 액	

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

산식에 따라 계산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A	×	$\frac{B}{C}$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배분 기준액	=	A	÷	B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

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text{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 나목 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 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text{배분 기준액} = A \div B$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합계액

2.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기 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해당 투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text{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 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126조제1항 중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68조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의7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을 배분한다.

제133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운영될 것

제135조제2항제1호 중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

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제1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3항”을 “법 제79조제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9조제3항”을 “법 제79조제3항제1호”로, “제3항제4호”를 “제3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

는 영으로 본다)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
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
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
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
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
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
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
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제137조제6항 중 “추가세액”을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

제13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2호다목 중 “2026년”을 “2026년 또는 2027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전환기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8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1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초적용연도”를

각각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발생 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로 한정한다)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에”를 “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회계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거래”를 “거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제가 신규 도입되는 경우에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6. 제5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계상된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중 해당 법인세제가 시행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에 상당하는 것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7. 제5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환원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각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하는 환원 금액의 합계는 이연법인세자산 금액(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2조의 제목 중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

3.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
-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나.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
-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제143조제3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을 “추가세액배분액등을”로, “추가

세액배분액 계산명세”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로, “추가세액배분액이”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추가세액 등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3부터 제125조의8까지, 제126조, 제131조, 제135조, 제137조, 제138조제5항, 제142조, 제14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대상조세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 ③ (생략)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 ----- ----- -----.	④ ----- ----- ----- ----- -----.	④ ----- ----- ----- ----- -----.	④ ----- ----- ----- ----- -----.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 -----.	1. ----- -----.	1. ----- -----.	1.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u>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 경우</u>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u>피인수기업의 합병 전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사업연도</u> 는	나. ----- ----- <u>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과 다른 그룹 또는 기업 간 합병의</u> ----- ----- ----- ----- ----- ----- <u>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u> ----- -----	나. ----- ----- <u>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과 다른 그룹 또는 기업 간 합병의</u> ----- ----- ----- ----- ----- ----- <u>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u> ----- -----	나. ----- ----- <u>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과 다른 그룹 또는 기업 간 합병의</u> ----- ----- ----- ----- ----- ----- <u>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u> ----- -----	나. ----- ----- <u>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과 다른 그룹 또는 기업 간 합병의</u> ----- ----- ----- ----- ----- ----- <u>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u> ----- -----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
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
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
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
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합병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
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2. ~ 4. (생략)

⑤ (생략)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

다. -----
----- 그룹 또는 기업
의 사업연도-----

----- 그룹 또는 기업의
합병일-----

-----.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2. (생략)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하며,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신설>

<신설>

분) ① -----

----- 구성기업 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기업의 -----

----- 기업(이하 이 장에서 “혼성기업”이라 한다)이 -----

가.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

3의2. (생략)

4.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으로 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5.·6. (생략)

7.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신설>

는 기업으로서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 기업이 아닌 기업

3의2. (현행과 같음)

4. ----- 다른 구성기업 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 기업의 소유지분-----

----- 기업에 -----

5.·6. (현행과 같음)

7. -----

----- 대상조세 금액의 계산에 반영된 소득을 얻은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다른 구성기업 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가 아닌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에 배분한다.

1. 구성기업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중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에 한정한다): 해당 대상조세 금액의 계산에 반영된 소득을 얻은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

2. 주주구성기업이 제1항제5호 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배분 시 그 배
분 한도, 대상조세별 세부 배분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정경
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생 략)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5
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재
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
의 방법으로 구성기업 간 대상
조세 배분 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연법
인세비용은 모든 구성기업의 조
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
라 계상한 이연법인세비용은 배
분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
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
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
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
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
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
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
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
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
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
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
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
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
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 조정대상조세 금
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
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글
로별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합계액-----
----- 조정대상조세 금
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
액의 합계 예상액-----

-----.

③ -----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

-----.

<삭 제>

<신 설>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산
입보완
규칙
국내구
성기업
배분비
율

$$\text{국내구} = \left(\frac{A}{B} \times \frac{50}{100} \right) + \left(\frac{C}{D} \times \frac{50}{100} \right)$$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

-----.

소득산
입보완
규칙
국내구
성기업
배분비
율

$$\text{국내구} = \left(\frac{A}{B} \times \frac{50}{100} \right) + \left(\frac{C}{D} \times \frac{50}{100} \right)$$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신 설>

<신 설>

<신 설>

1로 한다.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다.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

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2. 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분되는 대상조세로서 우리나라 이외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나. 법 제73조의5제5항에 따

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

로 보는 구성기업

3.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

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대

하여 지급하는 배당(이하 이

호에서 “국외배당”이라 한다)

에 대한 대상조세. 다만, 사업

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

당 국외배당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

로서 그 원천징수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

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

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

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

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4.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

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 설>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 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 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 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

<신 설>

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적용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신 설>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신 설>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

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73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3항

4. 제104조제1항제10호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 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

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
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
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
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
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
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
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
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
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
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
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신 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신 설>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도 같다)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begin{array}{rcl} \text{국내구성기업에} & & B \\ \text{대한} & & \\ \text{내국추가세액배} & = A \times \frac{\quad}{C} \\ \text{분액} & & \end{array}$$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
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금액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국내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득 금액의 합계액

2.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
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begin{array}{rcl} \text{국내에 소재한} & & B \\ \text{투자구성기업에} & & \\ \text{대한} & = A \times \frac{\quad}{C} \\ \text{내국추가세액배} & & \\ \text{분액} & & \end{array}$$

A: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투
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배분액

C: A의 계산에 포함되는 각 투자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득 배분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
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
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
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
기업에 배분한다.

1.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
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
내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text{배분 기준액} = A \div B$$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
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

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금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받
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
득 금액 합계액

2. 제125조의7제2항에 따른 당
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
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
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
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
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
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
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
하여 배분

$$\text{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
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
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

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 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5조의7제1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text{배분 기준액} = A \div B$$

A: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B: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합계액

2. 제13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5조의7 제2항에
 따른 당기 내국추가세액가산
 액: 각 투자구성기업[해당 사
 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
 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
 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
 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
 상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
 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또
 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
 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보다 작은 경우의 투자구
 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text{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
 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
 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
 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
 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
 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
 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생략)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
 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
 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

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
 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
 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
 업으로 본다.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

 -----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
 룬에 대한 특례) ① -----

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③ (생략)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의7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을 배분한다.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
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
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생략)

② ~ ④ (생략)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
례) ① (생략)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
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
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
로별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
세 배분액

<신설>

--

가.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
지국에서 설립·운영될 것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
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
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신 설>

2. · 3. (생 략)

③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

-----.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
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
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
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말한다)의 합계액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
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
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
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
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
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
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
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
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
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
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
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
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
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
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
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나.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
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
소득산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
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
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
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
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
액

④ 법 제79조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4호에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삭 제>

<삭 제>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
----- 제3항제1호라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 ⑤ (생략)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목

⑤ (현행과 같음)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
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
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 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적용면제) <신 설>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

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 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

⑦ -----

---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

제138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

----- 전환기 사업연도-----

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
 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1. (생략)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재정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일 것

가.·나. (생략)

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
 년에 속하는 전환기사업연
 도의 경우: 17퍼센트

3.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2026년
 또는 2027년-----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⑥ 법 제80조제3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
 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
 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

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초적
 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
 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
 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에 대해서는 해당 이연법인세자
 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른다.

1. (생략)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사업
 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최
 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로 한
 정한다)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초적용연
 도 개시일의 회계에 이연법인
 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
 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
 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3. 4. (생략)

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 최초적
 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

② (현행과 같음)

③ ----- 최초적용연도
 와 그 후 사업연도-----

 -----.

1. (현행과 같음)

2. -----
 ----- 회계기준에 따
 라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회계
 상 -----

 -----.

3.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가. (생략)

나.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 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 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 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신 설>

<신 설>

5.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거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

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최초 적용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제가 신규 도입되는 경우에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6. 제5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최

<신 설>

④ (생 략)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초적용연도 개시일에 계상된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
산 중 해당 법인세제가 시행
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직
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
손에 상당하는 것은 총이연법
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
한다.

7. 제5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
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
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
의 환원 금액의 범위에서 재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각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에 산입하는 환원 금액의
합계는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
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
율 이상인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을 말
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4조제1항 전
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
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
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
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
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
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1. 2. (생략)

<신설>

고 및 납부) ① -----

----- 추가세액배분액등-----

----- 추가세액배분
액등-----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
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
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
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
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
는 경우: 다음의 서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
역서

나.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

	<u>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 는 경우: 다음의 서류</u> <u>1)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 신고서</u> <u>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 정서 및 지정합의서</u>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u>추가 세액배분액</u>을 납부하는 국내구 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 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 부해야 한다. ③ (생략)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 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u>추가세액배분액</u>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	② ----- <u>추가 세액배분액등</u>-----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추가세액배분액등</u>을 ----- -----

서에 <u>추가세액배분액</u>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u>추가세액배분액</u>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생 략)	----- <u>추가세액배분액등의</u> 계산 <u>명세</u>----- -- <u>추가세액배분액등이</u> -----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신국제조세규범과	
연 락 처	(044) 215 - 4663